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 · 선발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7
----------	-----

2019. 4. 22. (월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서동학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4월 22일

(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서동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유아 모집·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유아모집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선발요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유아모집·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 시 학부모의 국·공립유치원 및 특정유치원 선호에 따른 쏠림현상과 과열경쟁 발생, 유치원 유아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,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·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올바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음
-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·선발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유아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여 충북 도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,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충북도내 공·사립유치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·선발 방법, 시기, 절차 등을 포함한 유아 모집·선발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·사립유치원 모두에게 균등한 방식으로 유아 모집·선발을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5조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6조에 유아 선발요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유아모집 시 유아 선발 인원에 따른 유치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학부모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7조에 유아 모집·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한 것은 유아 모집·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 제정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으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유아 모집·선발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·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아”란 「유아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1호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모집”이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말한다.
3. “선발”이란 모집된 유아 중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공·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모집·선발 계획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매년 유아 모집·선발 계획(이하 “선발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아의 모집·선발 대상, 인원 및 지원 횟수
2. 유아의 모집·선발 시기 및 절차
3.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·선발 방법

4. 유아의 모집·선발을 위한 구비서류

5. 유아 중 우선순위로 모집할 대상자 및 범위

6. 그 밖에 유아 모집·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,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원장은 유아 모집·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모집·선발 인원)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선발 요강)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선발 요강을 정하고,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모집·선발 방법) ① 원장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를 모집·선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·선발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16.6.23.] [법률 제13574호, 2015.12.2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“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는 자를 말한다.
4. 삭제 <2012. 3. 21.>
5. 삭제 <2012. 3. 21.>
6. “방과후 과정“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제11조(입학)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.

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·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·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(시·도에 한정한다)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·선발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9조의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·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④ 정보시스템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 3. 21.]

충청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대한 조례」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추계비용 발생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